

공적연금제도 개요

정 윤 한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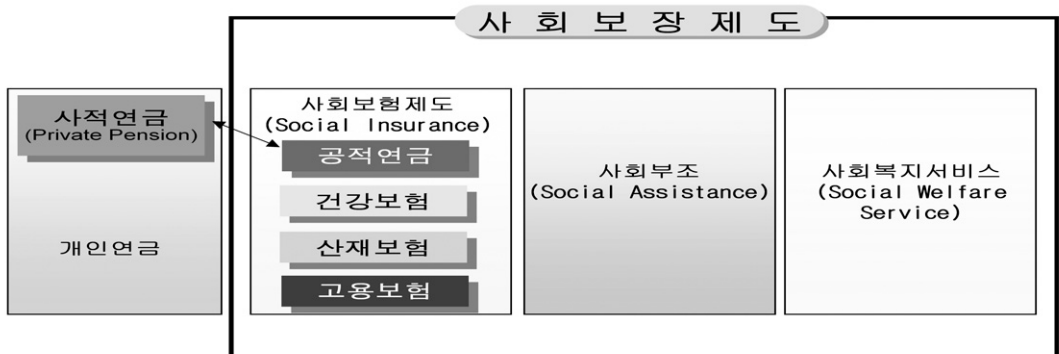
1. 공적연금제도의 의의

공적연금제도란 질병, 사망, 퇴직, 노령 등으로부터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주도하에 사회보험 원리에 기반을 둔 장기적 소득보장제도라고 정의한다.

공적연금제도는 개인 삶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인식하는 것을 기본 철학으로 하여 개인의 소득상실문제의 해소를 통한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공적연금의 기본 원리는 사회보험(Society + Insurance = Social Insurance)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국가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공적연금제도의 위상은 아래 그림과 같다.



2. 공적연금제도 운영원리

1) 사회보험의 원리

공적연금제도의 첫 번째 운영원리는 사회보험의 원리이다. 사회보험은 사회(복지)정책 수행을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차용하여 설계한 사회경제제도로써 보험의 원리인 수지상등(비용·급여 等價 원칙)을 가미하고 사회적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세대간·세대내 비용 부담과 재분배 요소를 가미하여 운영한다.

2) 강제가입의 원리

공적연금제도에 일반 국민을 강제로 가입케 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국가가 이를 강제할 정당성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강제가입의 논리적 근거로는 첫째, 부정주의(父情主義 : Paternalism)에 의한 국민 보호이다. 대체로 개인은 정보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근시안적 시각(Myopia)을 가지고 있으며, 수익률 등이 급변하는 시장을 통해서는 노령자의 노후 부양(扶養)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자애로운 아버지의 입장에서 국민(또는 공무원, 군인 등을 포함한 사회 전체)에게 사회보험제도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역선택(逆選擇 : Adverse Selection)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험계약상 역선택은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여 나타나는 시장 실패 현상인데 보험 시장 성립의 기본요건인 위험의 공동부담(Risk Pooling)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선택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성실히 노후준비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모두 하나의 제도에 묶어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 것이다.

한편, 개인의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 연금저축 등으로 노후준비가 가능하므로, 강제가입 논리의 정당성이 제시되나, i) 강제가입을 통해, 개인의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고, ii) 사회적 안정과 연대성 강화에 따른 총량적 복지 증진이 가능하며, iii) 개인의 후생 제고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Neighbor Effect)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요국 공적연금은 가입강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공적연금제도 발전과정

공적연금제도는 18~19세기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과거 가족 중심의 노인 부양이 사회적·국가적 문제로 발전(가족내 부양 → 사회적 부양)됨에 따라 도입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왕(국민)에 대한 충성과 장기 재직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공무원연금제도가 먼저 도입되었고, 국가에 의한全国人民 최저 생활수준보장이 필요하다는 비버리지 보고서 발표(1942) 이후,全国人民 연금제도가 유럽 각국에 보급되었다.

〈유럽 주요국의 공무원연금과 근로자연금 도입 시기〉

	공무원 퇴직연금	근로자 퇴직·노령연금
영 국	1834 고위공무원연금법 1859 공무원연금법	1908 無기여금 노령연금 1925 유족연금 및 기여금 납입 연금법 1946 사회보장법
프랑스	1790 국가공무원연금법 1853 공무원연금법 1924 공무원 및 군인의 연금 일치법	1910 의무적 사회보장 1930 사회보장 축소 1942 임금상한 없이 全근로자 사회보장
독 일	1805 바바리아제국 연금법 1825 프러시아제국 연금법 1873 제국 공무원법	1889 생계곤란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장제도 도입

4. 공적연금제도 분류 방식

1) 급여 결정 방식

급여 결정방식으로는 확정 급여형(Defined Benefit : DB)과 확정 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DC)이 있다.

확정급여형은 대다수 공적연금제도에서 채택하는 방식으로 급여산식을 미리 정하고,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결정한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기여율은 보수월액의 8.5%이고 급여는 재직 기간이 20년이 되면 최종3년 평균보수월액의 50%를 받고 20년 초과재직연수당 2%를 가산하여 33년을 한도로 최종

3년 평균보수월액의 76%로 정해진 급여를 받는다.

확정기여형은 민영 보험방식으로 보험료 수준을 정해놓고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급여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는 적립한 금액에 운용수익률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은 원금과 운용수익률에 큰 영향을 받는다. 확정급여형은 급여가 정해짐에 반해 확정기여형은 내는 보험료 금액만 정해지고 급여액은 유동적인 것이다. 한편, 확정기여형은 재정방식상 적립방식을 전제한다.

2) 재정방식

재정방식이란 연금으로 지급하는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은 당해연도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노령세대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미국, 네덜란드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독일, 프랑스, 영국, 벨기에, 포르투갈 등) 공무원연금에서 채택하는 재정 방식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2007년말 현재 공무원 연금 가입자수가 약 102만여명이고 연금 수급자 수가 25만명으로 부양율은 24.7%이다. 약 4명의 재직자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1명의 퇴직자에 대한 연금을 부담한다고 보면 된다.

적립방식(Funded System)이란 장래 예상 연금지출을 미리 산정하여 해당 금액만큼 보험료 조정 등을 통해 적립하는 재정조달방식이다.

3) 공적연금제도 구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상호 관계에 따라 공무원연금 독립형, 통합형, 공무원연금만 존재형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하다. 공무원은 신분상 제약, 낮은 급여 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별도의 구조로 운영할 것을 주장하는데 비해 민간 부문에서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급체제로 전환하거나 일부는 아예 국민연금과 통합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1) 공무원연금 독립형

우리나라, 독일, 프랑스, 호주, 벨기에 등 70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민연금과는 구분되는 연금

산정, 수급요건, 소득 대체율 등이 존재한다.

(2)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부분(또는 전부) 통합형

미국, 일본, 영국, 페루, 아르헨티나 등 23개국에서 노동 유연성 제고, 공공부문 선진화, 장기적 재정개선 등을 목적으로 1980년대 이후 독립적으로 운용되던 공적연금제도를 통합하고 있다.

(3) 공무원연금만 존재

방글라데시, 미얀마, 소말리아 등 6개국이 있다. 과거 식민지 시대에 공무원연금은 타의로 만들어졌으며, 경제발전 부진과 사회혼란 등으로 국가 내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만 존재하는 경우이다. 🙄

